



# 〔축산법령〕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28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0일 식육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한 HACCP평가기준과 HACCP적용 작업장의 지정변경 사항 중 소재지변경을 추가하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8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육추출가공품 HACCP 평가기준은 2008년 3월부터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 실무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개발됐으며 HACCP적용 작업장 지정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현행 중요관리점·회사명·대표자 변경 등에 한하여 변경지정이 허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불가피하게 HACCP적용 작업장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HACCP관리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지정변경이 가능하도록 반영했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무분별한 소재지변경에 따른 HACCP 수준저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소재지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HACCP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검역원은 이번 식육추출가공품 HACCP 평가기준 개발과 HACCP 적용 작업장의 소재지 지정변경 인정으로 축산물 가공품 안전성 확보와 HACCP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 ◎ 개정사유(改正事由)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축산물가공품 중 식육추출가공품 HACCP 품목확대를 통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主要內容)

#### 1 축산물 HACCP 고시 조항 일부 개정

- HACCP 지정사항 변경 중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정절차(조항신설)
- HACCP적용작업장 등의 표시·광고(제10조) 중 소재지 변경전 HACCP 로고 사용 제한(자구수정)

#### 2 식육추출가공품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추가(신설)

### ◎ 참고사항(參考事項)

- 관계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제9조의2
-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 법제·규제심사
-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알림마당 ◎법령·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요망.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b>검역원 고시 제2008-11호</b></p>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부터 제9조의3 및 제44조제1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22호 : 2007.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 <p>2008년 8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b>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b></p> <p>제1조~제7조 생략</p> <p>제8조(HACCP적용작업장의 평가방법 등) ① 시·도지사는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적용도축장 영업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하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②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8항 및 제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지정, 정기심사 및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의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가축사육단계(소·돼지·닭)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표에 의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영업자·농업인은 영업의 종류별·축종별, 가공품의 유형별로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기준원장은 제2항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보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원장은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의 지정(연장)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⑥ 기준원장은 정기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제2항의 정기심사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은 해당작업장영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p> <p>⑦ 생략</p> <p>제10조(HACCP적용작업장의 표시·광고 등) 제8조 규정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으로 적정하다고 확인 및 지정된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다.</p> <p>1. 별표 3의 HACCP 적용품목 표시부착 및 HACCP 품목지정사실에 대한 광고(하나의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외한다.)</p> <p>2. 작업장등의 출입구에 별표4의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표시시간판 부착</p> <p>부 칙(2006.3.20.) 이하생략</p>	<p><b>검역원 고시 제2008-28호</b></p>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부터 제9조의3 및 제44조제1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11호 : 2008.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8년 12월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b>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b></p> <p>제1조~제7조 생략</p> <p>제8조(HACCP적용작업장의 평가방법 등) ① 시·도지사는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적용도축장 영업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하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규칙 제7조의2 제5항에 의해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자 및 농업인(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이 되지 않아야 하며 기존의 HACCP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4 서식에 의한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축산업등록증 사본 2.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p> <p>③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5항·제8항 및 제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지정, 정기심사, 연장신청 및 소재지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의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가축사육단계(소·돼지·닭)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표에 의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영업자·농업인은 영업의 종류별·축종별, 가공품의 유형별로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기준원장은 제3항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보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원장은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의 지정(연장) 및 소재지 지정변경 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⑦ 기준원장은 정기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제3항의 정기심사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은 해당작업장영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제10조(HACCP적용작업장 등의 표시·광고)제8조 규정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으로 적정하다고 확인 및 지정된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다.</p> <p>1. 별표3의 HACCP 적용품목 표시부착 및 HACCP 품목지정사실에 대한 광고(하나의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과 소재지 이전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작업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은 제외한다.)</p> <p>2. 작업장등의 출입구에 별표4의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표시시간판 부착</p> <p>부 칙(2008.12.3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